

의안 번호	제3655호
----------	--------

#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9월 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
## 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’ 권고 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나. 그 밖에 용어 정비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